

광주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460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전주현
변 론 종 결 2022. 9. 6.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2020. 6.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20. 6. 4. 접수 제60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을 운영하던 B을 위해 B의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무를 아래
표와 같이 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그 약정에 따라 채무를 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과목	보증기한	채권자
1차	2011. 3. 24.	E	75,000,000	기업일반 자금대출	2012. 3. 23. (2021. 3. 19.변경)	D은행
2차	2013. 2. 27.	F	90,000,000	기업일반 자금대출	2014. 2. 27. (2022. 2. 18.변경)	"

2) B은 2021. 4. 13.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21. 8. 18. D은행에게 위 1차, 2차 보증관련 채무원리금 합계 155,811,062원(= 1차
보증관련 대위변제금 69,067,072원 + 2차 보증관련 대위변제금 86,742,990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B에 대하여 156,912,156원(1차, 2차 보증관련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154,727,862원 +
대지급금 잔액 1,765,434원 + 미지급 추가보증료 418,86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B은 2020. 6. 4.경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4.자 근저당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20. 6. 4. 접수 제60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2) B이 2020. 6. 4.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2021. 8. 18.경 발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의 B을 위한 보증계약이 2011. 3. 24. 성립되어 있으므로, B의 처분행위 당시 원고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의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1, 12-1, 1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1. 2. 19. 채무자인 B의 채무나 신용상태에 대해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21. 3. 19.(1차), 2022. 2. 18.(2차)로 연장통보한 점(갑 제3호증), ②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 1개월 전인 2020. 5. 13. D은행으로부터 161,000,000원을, 2020. 5. 7. G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일 2020. 6. 4.로 보증사고일인 2021. 4. 13.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B의 처분행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소연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보성군 H

대 696㎡

2. 전라남도 보성군 I

대 306㎡

3. 전라남도 보성군 J

대 299㎡

4. 전라남도 보성군 K

대 169㎡

5. 전라남도 보성군 J, K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보성군 L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28.64㎡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56.42㎡

- 이 상 -

